

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「정부조직법」 및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 개정에 따라 제36조 별표에 조회 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, 자동차·건설기계 소유권에 대한 조회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
(안 제36조 별표)
- 별표 중 순번 16번 “미래창조과학부”를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”로 변경하고, 17번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변경함
- 별표 중 순번 4번을 삭제함

3.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

순번	기관·단체	조회할 재산
1	법원행정처	토지·건물의 소유권
2	국토교통부	건물의 소유권
3	특허청	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
4	(삭제)	(삭제)
5	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	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(다음부터 "금융자산"이라 한다)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6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7	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8	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9	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10	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
11	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, 전문조합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12	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13	(삭제)	(삭제)
14	(삭제)	(삭제)
15	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	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
16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17	한국교통안전공단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별표			별표		
순번	기관·단체	조회할 재산	순번	기관·단체	조회할 재산
1	법원행정처	토지·건물의 소유권	1	법원행정처	토지·건물의 소유권
2	국토교통부	건물의 소유권	2	국토교통부	건물의 소유권
3	특허청	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	3	특허청	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
4	<u>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</u>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	4	(삭제)	(삭제)
5	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	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(다음부터 "금융자산"이라 한다)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5	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	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(다음부터 "금융자산"이라 한다)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6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6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7	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7	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8	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8	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9	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9	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10	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10	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11	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, 전문조합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11	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, 전문조합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12	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12	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13	(삭제)	(삭제)	13	(삭제)	(삭제)
14	(삭제)	(삭제)	14	(삭제)	(삭제)
15	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	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	15	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	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
16	<u>미래창조과학부</u>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16	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</u>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
17	<u>교통안전공단</u>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	17	<u>한국교통안전공단</u>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7712